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6.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6월 26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2년 7월 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및 재활용 촉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관리방향을 폐기물의 발생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 3) 영등포구, 사업자, 주민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5조 ~ 안 제7조)
-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 신설(안 제8조)
- 5)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 명시(안 제9조)
- 6)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 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제18조, 제19조, 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가. 본 조례안은 2010. 7. 23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2010. 12. 22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 “과 ” 발생억제 시책 추진지침 “이 시달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준칙안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초기단계부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구청, 주민, 사업자 각 주체별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안 제7조).
-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와 지도·권고,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하여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8조).
-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9조).
- 4)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5)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여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종량제 시행, 감량의무이행계획 및 적정 재활용 등 이행여부에 따른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함(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라. 이에 따라 구청과 주민, 사업자 등 각 주체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후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 발생억제를 위한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점점 심각해져가는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38 호
----------	---------

제출연월일 : 2012.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및 재활용 촉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관리 방향을 폐기물의 발생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명시함

-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 기본원칙(안 제4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 관계자의 책무(안 제5조 ~ 제7조)
 -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사업자, 주민)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
 -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안 제8조)
 -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 (사업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및 복합

찬기이용 등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포장 활성화 등

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안 제9조)

-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2조)
 -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종량제 실시 지역 전용수거용기 지원
 - 혼합배출 등 배출방법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 반영

라.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안 제8조, 제18조)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함(안 제8조 및 제18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함(안 제9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14조)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함(안 제18조)
-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도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 음식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함(안 제21조)
 - 과태료 산정기준 세분화 및 부과액 상향 조정(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총무과와 협의

라. 기 타

- 입법예고('12.5.31 ~ '12.6.20,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검토 필

붙 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

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구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2와 같이 정하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제1항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수수료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

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을 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8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0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

구 분	수 수 료	비 고
1.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세대당 월1,500원	
2. 위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단,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1인인 단독세대와 5인 이상인 세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세대별 월1,500원	
①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1인인 단독세대	세대별 월1,000원	
②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5인이상인 세대	세대별 월1,800원	
3. 음식점소	kg당 114원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사 업 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kg/일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리량 kg/일	⑯ 부산물 발생량 kg/일	⑰ 처리방법 처리자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자가처리	처리예상량 kg/일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처리방법	자가처리량	처리량누계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자	누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p> <p>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제 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p> <p>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p> <p>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율하는 자를 말한다.</p> <p>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p> <p>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p> <p>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p>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 이 ----- 용하거나----- ----- 그 밖의 용도로 활용-----.</p> <p>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 수거하 기 위한 -----.</p>

현행	개정안
<p>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p> <p>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란 <u>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 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u></p>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u></p> <p>②구청장은 <u>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u>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u></p> <p>1. <u>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u></p>	<p>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란 <u>음식물류 폐기물을 (선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u> ----- -----.</p> <p>제3조(적용범위) ----- <u>법 제14조제1항에 따라</u> ----- ----- <u>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u></p>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u>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u></p> <p>② <u>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u></p> <p>제5조(구청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u></p>

현행	개정안
<p><u>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u>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u>3. 삭제</u></p> <p><u>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u></p> <p><u>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 3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u>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센트</u></p>	<p><u>한다.</u></p> <p><u>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u>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u></p> <p><u>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u>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u>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u></p> <p><u>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u></p> <p><u>3.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시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u></p>	<p><u>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여야 한다.</p> <p>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p> <p>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 (자가, 위탁 물 변경한 경우</p> <p>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p> <p>〈신설〉</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p>	<p>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p>

현행	개정안
<p>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 68조제 3항제 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구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주민 등 (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p>
<p>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p>	<p>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택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낡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

현행	개정안
<p>⑥구청장은 <u>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정해진 전용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8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① <u>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보조금은 1가구에 1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액은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로 하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③ <u>감량기기를 설치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거주지 동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u></p>	<p><u>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u></p> <p>⑥ <u>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감량 기기 구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때 에는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 연월일이 명기된 영수증을 보조 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p> <p>⑤ 동장은 매월 접수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구청장에 게 송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장 이 송부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 지 신청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 고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p> <p>⑥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①음식 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 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 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 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 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 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배</p>

현행	개정안
<p>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p>	<p>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p> <p>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하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p> <p>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p> <p>제10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제1항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서 정한 수급권자</p>

현행	개정안
<p>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신축되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용기의 규격 및 용량에 대하여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③구청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규격 및 용량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하거나,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가구별·업소별 단위의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p> <p>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p> <p>제11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수수료 징수를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수수를 징수할 경우에는 지정받은 자의</p>

현행	개정안
<p>준으로 하여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p> <p>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p> <p>④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1조의 2(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개정 2007.07.19>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07.07.19>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p>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의 3(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수수료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수 있다.</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분리배출지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 14조제 2항 및 영 제6조의 2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8조제 4항 및 규칙 제 5조의 3제4호에 따라 재활용 창구이용 등을</p>	<p>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p> <p>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④구청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p>	<p>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p>④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 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 1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p> <p>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p> <p>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p> <p><u>〈신설〉</u></p>	<p><u>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p>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p>

현행	개정안
	<p><u>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u></p>
<p><u>〈신설〉</u></p>	<p><u>④ 구청장은 제 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u>〈신설〉</u></p>	<p><u>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u>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신설〉</u></p>	<p><u>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u></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 72제 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을 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으로 하여야 한다.</p> <p>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2.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p> <p>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p> <p>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p> <p>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p> <p>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p> <p>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p> <p>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1. <u>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 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 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u></p> <p>2. <u>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 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 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u></p> <p>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 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12조, 제14조 및 제7 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 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 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 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 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 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 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 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p> <p><u>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u> <u>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u> <u>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u></p>
<p><u>〈신 설〉</u></p>	<p><u>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u></p>